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011 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임오경·한민수·서영교

김남희 · 차지호 · 김윤덕

민병덕 • 위성곤 • 윤후덕

한정애 • 강선우 • 문정복

의원 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,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,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주거·생활편익·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특별관 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 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

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).

법률 제 호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중 "지역"을 "지역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의 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	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
제한)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	제한) ①
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	
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	
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	
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	
시・군계획사업(이하 "도시・	
군계획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	
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	
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	
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	
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·	
군수・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	
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	
다.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1
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	
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	

의 형질변경

가. ~ 라. (생 략)

마.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<u>지</u>역 주민의 주거・생활편익・생업을 위한 시설

1의2. ~ 9. (생 략) ② ~ ① (생 략)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
<u>지</u> 역
(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
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
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
함한다)
1의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① (현행과 같음)